

# 대외협력위원회운영규정

제 정 2021. 02. 08.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대한장애인탁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규약 제3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대외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장애인탁구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연구하고 협회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장애인 탁구 홍보 및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 관련에 대한 자문 및 지원
2. 장애인 탁구의 이해도 제고 및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3. 능동적 장애인 탁구 추진 지원 및 국제사회 활동 유도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장애인 탁구 발전에 관한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 원 장 1인
2. 부위원장 1인
3. 위원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협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은 장애인 탁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7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의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9조(회의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0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**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**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소위원회 설치)**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(비상설)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13조(사무처리)**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협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.

**제14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5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6조(준용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규약에 준한다.

## 부 칙('21. 02. 08.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